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법·제도 담당

제 목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 산정기준
관련 질의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중요사항 변경으로 사업
계획 변경 시 허가 신청 기한의 산정(최대5년)이 최초 사업계획 적합통보 인지
변경된 사업계획 적합통보 인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변경 적합통보일 기준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 폐기물처리
업자의 허가받는 보관용량,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변경

붙 임 : 환경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한국 자원 순 환 에 너 지 공 제 조 합 이 사 장
한국 산업 폐 기 물 매 립 협 회 장

대 리 김 정 훈 기술지원팀장 한 인 성 상 무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 사 장 이 만 석
회 장 강 경 진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1 - 352 (2021. 11. 19)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시 허가 신청기간 기산점 안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고 일정기한(최대 5년) 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다시 적합통보를 받고 일정기한 내에 시설 등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또는 상호,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30% 이상 증감) 등
3.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0호)」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와 규모 등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일을 기준으로 허가신청기간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부서)에 즉시 전파하여 동 행정사항이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 산정 기준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주무관 이정래 과장 2021. 11. 12.
문제원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2442 (2021. 11. 12.) 접수

우 61945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9 팩스번호 044-201-7376 / rain0167@me.go.kr / 대국민 공개

붙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따른 허가 신청기한 산정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관련

사업계획 변경사항 허가 신청기한 기산점	시설 공사와 관련 변경 적정통보일	시설 공사와 무관 최초 적정통보일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다. 영업구역		○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30% 이상 증감)	○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	○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	○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30% 이상 증감)	○	
바. 허용보관량	○	